

무연고자 사망에 따른 유류금품 공고

본 까리따스마태오요양원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시설입소 무연고자가 사망하여 장제처리를 하고, 유류금품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5조, 민법 제 105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법적상속인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기간내에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.

1. 사망자인적사항

성 명: 장순성
성 별: 여
생년월일: 1936.05.15
사 망 일: 2017.08.28.
사망장소: 속초의료원

2. 공고기간

2018년 1월 9일~2023년 1월 8일(5년)

3. 구비서류:

호적등본, 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4. 연락처:

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버리깨길 42 까리따스마태오요양원 (T.033-638-6004)

까리따스마태오요양원장

